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504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504의 기초 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① 상품의 특이사항

Q1 :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504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1 :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504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세금리를 반영한 높은 금리로 부리적립(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 최저보증)
- 만55세부터 80세까지 연금개시나이 선택가능
- 다양한 연금형태 제공 : '종신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 중 고객여건에 맞는 연금형태 선택가능
- 추가납입제도 : 여유자금으로 자유롭게 추가납입이 가능

Q2 :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504의 세제 관련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2 :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504의 세제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여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5%)]를 받을 수 있음

- 중도 해지시 과세 :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연금 외 수령시에는 기타소득(16.5%,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 다만, 계약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시에는 연금소득(5.5%~3.3%, 지방 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
- 연금 수령시 과세 : 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됨. 다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5.5%~3.3%, 지방 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함
- 승계 : 계약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함
- 이전 :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세제 관련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으로, 이 계

약의 세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련세법에 따르며,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3 : 기본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는 무엇인가요?

A3 :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체신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일시중지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로 합니다.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매월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일시중지에 따라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저축성 보험 요건(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금액[계약 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환급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체신관서는 약관 제27조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② 보험가입 자격요건

■ 보험종류 : 연금저축(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 보험기간

구분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종신연금형	보험계약일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종신
확정기간연금형 (10,15,20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최종연금 지급일

■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기본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주기
		납입기간	납입주기	
0~(연금 개시나이-5)세	만55~80세	5년~전기납	월납	수시납

■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액

10년납 미만	10년납 이상
10~75만 원	5~75만 원

주) 1천 원 단위로 가입

■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액

-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1)세 계약해당일까지 납입 가능
-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하며, 최고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12×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의 2배로 함

※ 단,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진단 여부 : 전건 무진단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① 상품의 구성

주계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선택)

② 보험금 지급사유

아래 내용은 계약자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약관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생존 연금	종신 연금형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보증지급)
	확정 기간 연금형 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 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 기간동안 매년 지급

- 주) 1.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적립금액”이란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IV(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 최저보증)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터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

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저보증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약관 제25조【기본보험료 납입일시중지에 관한 사항】제3항에 따라 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약관 제28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제5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20년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3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3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6.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IV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7. 신공시이율IV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IV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8.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IV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IV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IV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③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의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기본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 기본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소정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계약자적립액이 공제액 합계 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당 진단서	비고
연금지급시	○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한 사고확인서 등
사망시	○	○	○	
해약시	○	○		
환급금대출시	○	○		
■ 매년 당해년도의 최초 연금 지급시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① 예정이율

Q : 예정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504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단위 복리 2.5%입니다.

② 예정위험률

Q : 예정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기준 : 40세 가입)

구분		40세	60세	80세
개인연금사망률	남자	0.00077	0.00164	0.01346
	여자	0.00048	0.00056	0.00622

③ 적용이율

적용이율이란 체신관서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504는 신공시이율IV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504의 신공시이율IV가 변동될 경우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④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시중금리 등이 하락하여도 체신관서에서 보증해드리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로서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504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배당

Q : 계약자배당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체신관서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이익배당금으로 환원하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② 과거 5년간 계약자배당 실적 (단위 : %, 억 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4.3	1,630	4.3	1,763	4.3	1,838	3.6	753	3.5	549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①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신공시이율IV(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합니다)로 적립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②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단위 : 원)

경과기간	기본보험료	100,000	200,000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1,200,000	1,038,710	2,400,000	2,089,570
3년	3,600,000	3,460,800	7,200,000	6,958,990
5년	6,000,000	6,000,450	12,000,000	12,064,760
7년	8,400,000	8,611,490	16,800,000	17,314,630
10년	12,000,000	12,840,160	24,000,000	25,816,240
15년	18,000,000	20,685,430	36,000,000	41,588,120
20년	24,000,000	29,540,010	48,000,000	59,389,070

주) 위 해약환급금은 2.45%의 신공시이율IV가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금액으로 신공시이율IV 및 보험료 납입일 등이 변경되면 위 해약환급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수수료 안내표)

○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 기본보험료 10만 원,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판매 보수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1.22% (1,221원) 10년 초과 : 0% (0원)
			유지 보수	7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1.8% (1,800원) 7년 초과 : 0% (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기본보험료의 3.0% (3,000원)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공제비용	해지시	※ 아래 도표 참조	

※ 해지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후
해지공제금액(만 원)	10.4	7.8	5.2	2.6	0	0
해지공제비율(%)	8.7	3.3	1.4	0.5	0	0

주) 해지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의 비율

○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관리비용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0.8%